



## ◆ (한국조경학회) 조경인들의 의견수렴 요청

**-조경인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119조 간이화단 설치에 대한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앞으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 기존 아파트의 베란다와 거실의 경계 구조벽과 경계문이 자율적으로 해체될수 있으며, 특히 신축 아파트의 간이화단은 설치 의무조항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연간 3000억이상의 실내조경및 벽면 조경등 조경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조경식물의 판매에도 피해가 예상됩니다.

2002년부터 설치하기로 한 아파트 베란다 실내외로 설치하기로 한 아파트 베란다 간이화단의 설치 조항을 고수하고자, 조경인들의 의견을 모아 건설교통부에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조경산업의 보호와 앞으로 발생될수 있는 건설과 조경사이의 법적 문제 발생시 조경전문가의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의 아파트 간이화단의 설치조항 고수는 매우 중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조경인들의 의견수렴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며, 별첨의 내용을 읽어 보시고, 꼭 서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첨부된 자료를 읽어보시고, 본 의견에 찬성을 하시는 분은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하셔서 한국조경학회 사무국으로 11월 4일(금)까지 팩스

(02-565-2056), 이메일(kila96@chol.com),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전국 소나무류 무단이동 889건 적발

**산림청, 특별단속 6일만에 889건 적발**

산림청(청장 조연환)이 소속기관과 지자체, 산림조합, 민간단체와 공조로 지난 9일부터 전국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이 시작 6일만에 889건의 단속실적을 올리면서 소나무류 이동을 제한하는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단속기간에 적발된 889건중 3건에 대해서는 '방제조치명령서'를 발부하였으며, 단 순위반 886건에 대해서는 '계도조치'하는 한편 재선충병 피해 의심목 및 소나무류 이동상황 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39만명을 대상으로 홍보활동도 함께 전개했다.

### (주요 적발사례)

-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구리요금소)에서 강원도 삼척에서 생산된 소나무에 생산확인표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도 남양주로 이동하는 것을 적발하여 방제조치명령서 발부(11.10)
- 칠곡군에서 제재목·빠레트·폐목의 칩 용도생산 생산·유통대장 사본없이 5톤 화물차로 이동하는 것을 적발하여 계도조치(11.12)
- 진주시 외울리 숲가꾸기 산물 일부를 화목용으로 반출하는 것을 적발하여 계도조치(11.12)

또한 안동, 봉화, 공주 등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소나무적재 화물차 140여대가 생산확인표를 부착하고 이동하는 등 소나무류 이동단속 특별지침을 철저히

하게 준수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한편 특별단속활동에 대한 관심과 온정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 구미시에서는 간부공무원들이 단속 현장체험을 실시하는가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단속 현장을 수차례 방문하여 근무자를 격려하고 간식을 제공하는 등 관심과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생산한 소나무에 검인을 찍지 않고 이동하거나 생산확인표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나무류를 이동시키다 적발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고 밝히면서, “소나무류 이동제한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소나무류 이동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강화하여 무단이동으로 인해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라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현재 전국 고속도로 및 주요 국도 367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연인원 9천여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하여 24시간 특별단속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조경설계연구회 제6차 설계포럼**

한국조경학회 조경설계연구회와 월간 환경과 조경이 주최하는 100분 토론 “조경가로 산다는 것”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조경가로 살기를 꿈꾸는 그들.

그러나 조경가라는 이상과 삶이라는 현실 사이의 교집합은 넓지 않습니다.

이 시대 이 땅에서 “조경가로 산다는 것,”

정교하게 문제를 진단하고 그 원인을 탐색하는 일은 조경가로 성장하기 원하는 그들을 위한 단기적 처방일 뿐만 아니라 한국 조경의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장기적 설계입니다.

“조경가로 산다는 것,” 토론판을 벌입니다.

- i. 조경설계사무소에는 왜 40대가 없을까?
  - ii. 작가로서의 조경가 vs. 직업으로서의 조경설계
  - iii. 조경가로 성장하기
- 치열한 논쟁과 풍성한 고민으로 달구어질 이번 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 한국조경학회 조경설계연구회 회장 김영대

○ 주최 : (사) 한국조경학회 조경설계연구회+ 월간 환경과 조경

○ 일시 : 2005년 12월 6일(화) 오후 7시-9시

○ 장소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강당(103호)

○ 100분 토론 패널

• 사 회 : 배정환

단국대학교 환경조경학과 조교수

• 패 널 :

황용득 / 동인조경 마당 소장

오형석 / 조경설계사무소 losyk 소장

정옥주 /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조교수

이호영 / 조경설계 서안 대리

◆ **우리민족의 상징木 ‘소나무’, 국민의 손으로 지킨다!!**

22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조연환 산림청장을 비롯한 문화예술, 언론·방송·교육,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으로 죽어가는 우리민족의 상징木 ‘소나무’를 지키기 위한 『소나무 지키기 국민연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소나무 살리기에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호소하고 나섰다.

앞으로 결성될 『소나무 지키기 국민연대』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실태와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와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예방과 방제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우리의 얼과 혼

인이 담긴 소나무와 소나무 숲이 어울어진 우리 강산과 문화를 지켜나가는 국민운동을 민간차원에서 주도하게 된다.

이처럼 소나무를 살리기 위한 민·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국민적 관심과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다면 소나무재선충병이 우리땅에서 사라질 날도 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나무 지키기 국민연대 추진위원외 결성식 참석객]**

조연환(산림청장), 강지원(변호사), 김후란(문학의 집 이사장), 문국현(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유인춘(서울문화재단대표), 이형모(시민의 신문 사장), 전영우(국민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지영선(136 환경포럼대표), 최열(환경재단 대표)

**◆ [한국조경학회] 용산공원을 위한 심포지움 안내**

**<용산공원을 위한 심포지움>**

**1. 목적**

- 공원 기본구상 수립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필요
- 심포지움·공청회 등의 개최를 통해 국민적 관심 유도
- 전문가, NGO, 국민으로부터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등 여론수렴 기회 활용

**2. 추진계획**

- 반환부지의 토지이용계획, 공원의 성격·기능 및 역할에 대한 기본방향 마련을 위한 심포지움(국제심포지움 포함)을 시리즈로 개최

**3. 개요**

- 주제 : 용산의 과거와 미래

- 일시 : 2005년 12월 19일(월)
- 장소 :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 주최, 주관 : 용산민족역사공원건설추진위원회/한국조경학회
- 후원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임학회

**4. 주제발표 및 토론**

- 주제 : 용산 미군기지의 과거와 미래
- 사회 : 성종상(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기조발표 : 서울 속의 용산, 용산의 미래/ 이어령, 중앙일보 고문, 전 문화부장관

**○ 주제발표**

- 발표 1 땅과 사건의 역사로 본 용산 미군기지/ 신주백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 발표 2 용산기지의 문화정치·생태담론/ 홍성태 상지대학교 사회과학대 교수
- 발표 3 용산기지의 도시·경제적 가치/ 김의준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 종합토론 : 좌장: 황기원(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

**- 토론자(4인) :**

- 역사 : 전우용(서울대 병원사연구실)
- 도시계획 : 신창호(서울시정연 도시경제센터장)
- 시민사회연론 : 유상오(경향신문전문위원)
- 문화 / 도시 : 최정한(공간문화센터대표)

**◆ 소나무류 이동제한 특별지침 개정 알림**

2005.11.1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나무류 이동제한 특별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비상대책에 따른 소나무류 이동제한 특별지침

I. 개요

□ 배경 및 목적

○ 그동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시행 등 확산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금년 들어 벌써 13개 시·군·구에서 신규로 발견되는 등 계속 확산 추세임

- 북쪽으로는 경북 포항·안동을 지나 강원도 강릉까지, 남쪽으로는 남해까지 확산되었음

- 금년 신규 발견 13개소 중 인위적 확산이 62%에 이룸

※ '05.10월 현재 8개 시·도, 51개 시·군·구에 걸쳐 5,111ha의 산림 피해 발생

○ 기존 피해지역 이외 미발생된 지역이라도 발생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비상대책(2005. 10. 24)을 수립·시달하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소나무류 이동제한 특별지침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적용 범위

○ 대 상 : 직경 2cm이상인 국내산 소나무류(소나무·해송)의 생목(生木), 원목, 제재목 및 폐목 등

○ 지 역 : 전국

○ 적용범위 :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 감염여부 확인 및 단속 요령

○ 근거법령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적용 기간 : 2005. 11. 1 ~ 2006. 6. 30

※ 다만 2005. 11. 1 ~ 2005. 11. 30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

II. 이동제한 지침

1. 용어의 정의

○ “소나무류”라 함은 소나무와 해송을 말한다.

○ “이동”이라 함은 소나무류를 사업장 외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 “사업장”이라 함은 벌채·굴취구역, 산지전용구역, 조경수 등의 재배구역 등을 말한다. 다만, 사업장의 구역이 2개 이상의 읍·면·동에 걸쳐 있을 때에는 읍·면·동 단위로 본다.

○ “조경수 및 분재”라 함은 포기·분(盆)에서 재배한 조경수 및 분재(근원경 2cm 이상인 묘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감염목”이라 함은 소나무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이라 한다)이 존재하는 소나무류를 말한다.

○ “감염우려목”이라 함은 재선충병 감염의 의심되는 소나무류를 말한다.

2. 사업장별 이동제한 내용

가. 입목의 벌채 및 굴취

□ 입목 벌채 및 굴취 허가 등에 따른 이동

○ 특별법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사업장 외의 지역으로 이동이 금지됨

○ 특별법에 따른 연접지역 및 일반지역에서는 소나무류의 벌채·굴취 허가 등을 제한하되, 허가 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 지침에 따른 확인절차를 엄격히 적용

○ 연접지역 및 일반지역에서 벌채·굴취 허가 등을 얻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13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 및 동 지침에 따라 극인적기(생산확인표 발급)를 하여야 함

- 임의 벌채 및 굴취에 따른 이동
  - 임의 벌채·굴취의 경우에도 반출금지 구역에서는 사업장 외의 지역으로 이동 금지
  - 연접지역 및 일반지역에서 임의 벌채·굴취하여 사업장 외의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13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 및 동 지침에 따라 극인찍기(생산확인표 발급)를 하여야 함
- 나.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의 벌채·굴취에 따른 이동
  - 반출금지구역인 경우
    - 반출금지구역내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벌채·굴취로 생산된 소나무류는 사업장 외의 지역으로 이동 금지
  - 연접지역 및 일반지역인 경우
    - 산지전용허가 대상지 등에서 소나무류가 생육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13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 및 동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여야 함
      - 산지전용 허가시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전에 착공계를 제출하고 산지전용담당자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여부에 따라 벌채·굴취, 방제 조치 등을 하여야 함
      - 산지전용 협의시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전에 착공계를 제출하고 산지전용담당자(주된 행정처분을 한 담당자를 포함한다)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여부에 따라 벌채·굴취, 방제조치 등을 하여야 함
      - 산지전용 등의 주된 행정처분을 한 담

- 당자는 현장 확인시마다 산지전용협의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동 지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 산지전용허가지 등의 현장감독관 및 사업시행자는 소나무류의 벌채·굴취가 완료될 때까지 산지전용담당자와 합동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동 지침에 따라야 함
- 상기 허가 등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됨을 명시
- 기 허가 등이 이루어진 구역에서 벌채·굴취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경우에도 감염여부 확인, 극인찍기(생산확인표 발급) 등 관련규정을 따라야 함
  - ※ 조경수 및 분재의 재배를 목적으로 한 산지전용 등의 경우에는 “다”항에 따라 조치
- 다. 조경수 및 분재
  - 반출금지구역인 경우
    -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는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반출
    - 예방약제의 종류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으로 등록된 재선충병 약제를 말함
    - 다른 예방조치라 함은 재선충병 약제(스미치온 등)를 지상에서 이동하기 10일 이내에 살포하는 것을 말함
    -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종류는 별표1과 같음
  - 해당 산림부서에서는 이동이 허용된 조

경수 및 분재가 실제 이동이 완료되기 전까지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고, 재선충병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즉시 소각 또는 파쇄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 연접지역 및 일반지역인 경우

- 연접지역 및 일반지역에서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동지침에 따른 확인절차를 거친 후 특별법 제13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 및 동지침에 따라 극인찍기(생산확인표 발급) 등을 하여야 함
-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굴취된 생입목을 조경수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 지침을 적용하되, 다만 매개충 우화기(5월~8월)에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이동전 10일 이내에 약제를 살포할 것

Ⅲ. 소나무류 이동에 따른 확인 및 조치사항

1. 확인 개요

가. 확인 방법

- 확인방법은 육안 및 현미경 검사로 구분
- 육안검사를 우선 실시하되, 육안검사 후 감염이 우려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현미경 검사를 실시
- 육안검사 방법은 별표2와 같음
- 현미경 검사 시료채취 방법은 별표3과 같음

나. 확인 기관

- 육안검사: 현미경 검사기관 및 시·군·구 산림부서(국유림의 경우 국유림관리소)
- 현미경 검사: 별표1과 같음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절차는 별표4와 같음

2. 반출금지구역 내에서의 확인 및 조치사항  
가. 훈증처리목의 경우(특별법 제10조제1항 제2호 관련)

□ 감염지역 해당 시·군·구 내에서 이동할 때

- 훈증처리목이 6월을 경과하였거나 관계 공무원이 재선충병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동 가능
- 훈증처리목을 칩 공장 등으로 이동하여 즉시 1.5cm 미만으로 파쇄 또는 소각하여 이용하는 경우의 확인 및 조치사항
  - 차량으로 이동시 적재물을 포장하는 등 훼손 및 이동 등으로 인한 누락목의 발생 방지
  - 칩 공장 등에서 실제 1.5cm 미만으로 파쇄
  - 칩 파쇄작업은 운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
- 시장·군수·구청장이 경관 유지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동하는 경우에는 산림부서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훈증결과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즉시 소각 또는 파쇄

□ 감염지역 해당 시·군·구 밖으로 이동할 때

- 산림부서의 담당공무원은 시료를 채취,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에 현미경 검사를 의뢰하여 재선충병의 미감염 확인 후 이동 조치
  - 만약 재선충병의 감염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소각·파쇄 및 훈증 조치
- ※ 매개충 우화기(5월~8월)에는 감염지역 해당 시·군·구 내외를 막론하고 훈증

처리목 이동을 금지  
 나. 조경수 및 분재(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 관련)

- 생산자(이용자 등 포함)가 재선충병의 감염여부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
-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에서는 신청된 조경수 및 분재가 재선충병 예방약제 주사 또는 다른 예방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자료(생산자가 소속된 산림청 등록 단체의 확인증도 포함)의 검토와 육안검사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증 발급
  - ☞ 소량으로 이동(판매)하거나, 이동(판매) 시기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검사를 실시하고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함
- 육안검사 후 감염이 우려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현미경 검사를 실시한 후 확인증 발급
  - 감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증 발급
  -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및 생산자에게 통보하여 방제 조치

다. 제재·원주목 등의 경우

- 소나무류를 사용하여 제재·원주목 등을 생산·유통하는 업체는 특별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작성·비치하여야 함
- 소나무류의 제재·원주목 등을 이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사본을 소지하고 단속 등의 경우에 제시

- 해당 지역 시·군·구 및 국유림관리소의 담당공무원은 분기별로 1회 이상 해당 업체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함

3. 연접지역 및 일반지역에서의 확인 및 조치 사항

가. 재선충병 미감염이 확인된 경우 다음에 따라 이동 조치

- 벌채목의 이동조치
  - 미감염 확인을 위하여 이동전에 극인찍기를 원칙으로 함. 다만, 칩·보드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동하고자 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산확인표 발급으로 갈음할 수 있음
  - 극인찍기는 현장에서 대상목의 말구 또는 원구 단면에 “검”자를 찍음
- 제재·원주목 등의 경우
  -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이동과 같은 방법으로 이동조치
- 조경수 및 분재
  - 별지 제4호 서식의 생산확인표 발급을 원칙으로 함. 다만 대상목이 2본 이상인 경우에는 이동 건수(차량 등)에 따라 각각 부착
    - ☞ 소량으로 이동(판매)하거나, 이동(판매) 시기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검사를 실시하고 확인표를 발급하여야 함
-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굴취된 생입목(이하 “굴취목”)
  - 미감염 확인을 위하여 이동전에 극인찍기를 원칙으로 함. 다만, 소경목 등 극인찍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생산확인표 발급으로 갈음할 수 있음

- 극인찍기는 현장에서 대상목의 하단부 등의 외피를 살짝 벗기고 굴취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검”자를 찍음

나. 극인찍기 및 생산확인표 발급 절차 등

- 극인찍기(생산확인표 발급) 절차는 별표 5와 같음
- 극인 규격은 별표 6과 같음
- 극인찍기(생산확인표 발급)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Ⅳ. 이동제한 단속 요령

1. 단속대상

-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명한 방제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 ※ 검문소 등에서 단속을 하면서 생산확인표 등을 소지하지 않아 방제조치명령서를 발부 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법 제8조에 의한 단속대상임
- 특별법 제10조 관련
  - 규정에 의한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인 입목과 원목을 이동하거나 훈증처리 후 6월이 경과하지 않은 훈증처리목을 관계공무원의 확인없이 훼손 및 이동한 자
  - 반출금지구역의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를 사업장 외로 이동한 자
  - 반출금지구역에서 굴취된 소나무류를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 없이 무단으로 이동한 자
  - 산림소유자 등이 감염목을 판매·이용하는 경우
  - 반출금지구역 연결지역에서 소나무류를

벌채 또는 굴취할 때에 산림부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특별법 제13조 관련 등

-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등

2. 검문소 등에서의 이동 단속 및 조치사항

- 단속공무원이 검문소 등에서 특별법 및 동 지침에 위반한 소나무류를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방제조치명령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운반경로를 면밀히 추적하여 감염목이나 감염우려목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14일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방제조치 명령을 내림
  - 담당공무원은 방제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
  - 적발된 경우에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동의하고 소각시 화재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방제조치 명령이 없어도 소각시설 등에서 소각할 수 있음
- 특별법 및 동 지침에 따른 이동제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처리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 검문소 등에서의 이동 단속 및 조치 요령은 별표7과 같음

V. 행정사항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비상대책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가용 인력 및 자원을 우선 배치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단속에 철저
- 국립산림과학원 및 시·도의 산림환경

연구기관은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확인반을 긴급 편성·운영

- 각 지방산림관리청에서는 관할지역 내 재선충병 비상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조
- 지방자치단체 등은 경찰, 도로관리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단속 등 재선충병 비상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해당 산림부서에서는 계도기간(2005. 11. 1~ 11. 30)중 이 지침에 따라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이동을 위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동 지침에 따라 접수·처리하여야 함
  - ※ 특별법 적용 사항은 계도기간과 상관없이 종전과 같이 단속 실시
- 특별법에 따라 시행한 소나무류 이동에 관한 확인지침(2005. 10. 17)은 이 지침으로 대체
- 개정 지침은 2005. 12. 6부터 시행함

**◆ 공원구역 및 그린벨트 등으로 묶여 있는 개인소유 산림도 산림청에서 매수합니다**

산림의 국토보전 기능 뿐만 아니라 맑은 공기, 맑은 물, 건강한 숲 및 쾌적한 생활환경 등 다양한 산림서비스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그동안 공원구역 및 그린벨트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개인소유 산림도 우리청에서 직접 매수할 계획입니다.

- ◆ 매수대상 산림 : 공원구역·그린벨트·상수원보호구역내 산림 등
- ◆ 매수시기 : 2005. 12. 1부터
- ◆ 매수가격결정 :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의해

평가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매수수행기관 : 산림청 산하 5개 지방산림관리청 및 25개 국유림관리소

매수예산규모는 금년도의 경우 664억원을 투입하여 매수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758억원, 2020년도까지 매년 8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매수할 계획이오니 매도의 사가 있으신 산림소유자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국민제안” 공모**

-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방제할 수 있는 참신한 대안을 관계 전문가 뿐만 아니라 국민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찾아보고자 합니다.
- 소나무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합니다

**I. 공모 계획**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국민제안』공모 개요
  - 공모자격 : 개인, 기관, 단체 제한 없음 (공무원 포함)
  - 공모분야 : 소나무재선충병을 효과적으로 예방, 치료 또는 방제할 수 있는 방안
- 공모기간 및 방법
  - 공모·접수 기간 : '05. 12. 13 ~ '06. 1. 11
  - 접수방법 : ①방문 접수, ②우편 접수, ③이메일, ④팩스 접수⑤산림청 홈페이지 “국민제안” 코너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
  -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양식 : 반드시 붙임서식으로 공모
- 제안배경, 구체적 방안 및 기대효과 등을 기재(필요한 보조자료 포함)
- 공모 분야
- 숲수염하늘소 등 매개충 또는 소나무재선충 관련 부문
- 감염목 처리(소각, 훈증, 파쇄등), 또는 감염목 이동 단속 부문
- 예방 및 치료약제 관련 부문 등

II. 심사방법 및 시상

□ 심사단계 및 방법

- 심사단계
- 1 차심사 : 산림과학원, 시·도관계관, 재선충병방제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하여 심사
- 2 차심사 : 외부전문가, 국장급 등으로 구성된 '재선충병 방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에서 최종 심사 확정
- 심사방법
- 심사기준 : 개선효과, 실현가능성, 참신성, 내용의 충실성 등
- 평가점수 : 심사기준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되, 개선효과와 실현가능성 항목에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심사

□ 심사발표 및 시상

- 발표 : 2006. 2월중 개별통지 및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재
- 선발 및 시상
- 선발 : 총 5명(금상 1, 은상 1, 동상 1, 장려상 2)
- 시상 : 상장, 시상금(금상 300만원, 은상 200만원, 동상 100만원, 장려상 30만원)

※ 심사일정 및 시상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

□ 제안 관련 사항

- 기 주지된 사실, 단순 민원성 제안, 우리청에서 검토중인 사항은 심사에서 배제
- 금, 은 동상 등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개의 동일한 제안에 대하여는 접수된 순서를 우선하여 고려
- 제출된 제안에 대한 개별답변은 하지 않으며 일체의 지적소유권등은 산림청장이 소유(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III. 기타사항

- 문의처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팀 (042-481-4122, 042-481-4107)
- 우편·방문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07 정부대전청사 1동 1801호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방제팀
- 전자우편 : dskim2@foa.go.kr
- 산림청 홈페이지(www.foa.go.kr) "참여의 숲" → "국민참여" → "국민제안" 코너에 붙임서식으로 작성하여 파일로 첨부
- 팩스 : 042-481-4109

